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일시: 2022. 4. 18.(월) 14:00~16:00

장소: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대교육장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일시: 2022. 4. 18.(월) 14:00~16:00

장소: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대교육장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목 차

- [토론회 일정 및 진행순서]
- [축 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인 사 말]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최명진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기조 발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1
송지현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 [지정토론 1] 실질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위한 제언 25
최명진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지정토론 2] 대전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마련 방안 35
박정은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지정토론 3]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39
박찬권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 [부 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9

토론회
일정 및 순서

- 일 시 : 2022. 4. 18.(월) 14:00 ~ 16:00
- 장 소 : 대전광역시 NGO 지원센터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주 제 : 대전 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구 분	일 정
13:00 ~ 14:00	【등록 및 접수】
14:00 ~ 14:15 (15)	【개회식】 사회자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축 사】 조승래 국회의원(*4) 【인사말】 대전인권사무소장(*4),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4)
14:15 ~ 14:20 (5)	【모두발언】 좌장 이채식 우송공업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14:20 ~ 15:40 (80)	【기조발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20) ☞ 송지현(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원) 【지정토론】 토론자(*60) ☞ 최명진(함께하는 대전장애인가족연대 대표) ☞ 박정은(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박찬권(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15:40 ~ 15:55	【질의·응답】 발제·토론자, 참석자(*15)
15:55 ~ 15:59	【정리 발언】 좌장(*4)
15:59 ~ 16:00	【인사 및 종료】 사회자(*1)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대전 장애인권현안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님과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송지현 연구원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패널분들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인권 향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고 이로 인해 매년 다수의 차별행위 관련 진정이 인권위원회에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기 의사 표현의 제한이라는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애인 중에서도 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큰 위험군에 속합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생애단계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 제도를 확립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교육위원회 소속 시절부터 장애인의 교육권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가야 할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전 발달장애인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전면적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전 장애인권현안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국회의원 조 승 래

인사말 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박병수입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대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명진 공동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시는 조승래 국회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 발제자, 토론자로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실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장애인 인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왔습니다.

잘 아시듯이,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오랜 요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값진 성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법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삶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보다 분명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정비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제반 분야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발달장애인이 그들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시정기구이자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발달장애인 인권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박 병 수

인사말 2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대전장애인가족연대 대표(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최명진입니다.

4월은 언제부터인가 제겐 찬란한 슬픔의 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아들의 장애를 직면한 순간부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들의 장애 이전과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졌고 저를 포함한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들의 장애를 직면한 이후 이곳저곳을 수수문하며 지원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그렇게 저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만났습니다. ‘자녀의 권리, 부모의 힘으로’~!!! 이렇게 명확한 말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저 역시도 행복하게 살 수 없기에 2003년부터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 장애아보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2018년 발달장애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그리고 2022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식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연대 활동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활동, 국가인권위원회 위촉인권강사로, 교육청의 인권지원단, 특수교육운영위원, 동료상담 등의 교육, 장애인시설 인권지킴이단 활동과 교육, 전수조사를 통해서 만난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었고 동등한 사람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런 의미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발판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이유입니다. 오죽하면 ‘일상이 코로나’라는 한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까? 발달장애인의 인권이 더 이상 차별과 혐오, 법과 제도의 한계 등으로 지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 더불어 함께의 삶을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18일

대전장애인가족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최명진

[기조발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특히 발달 장애인은 자기 의사 표현의 제한으로 인하여 스스로 권리 주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보호가 힘든 경우가 많아 가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국가의 책무성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2018년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이 도입되고 서비스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합하는 충분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의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일상생활, 교육, 직업, 사회·문화여가활동, 주거, 소득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의 현황

전국 발달장애인은 2020년 기준 247,910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2,633,026명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지적장애는 217,018명으로 8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폐성장애는 30,802명으로 12.4%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체 심한 장애인의 25.2%를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17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4,170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21.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33,499명, 경남 17,824명, 경북 17,707명, 부산 14,193명, 전북 13,3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에 전체 발달장애인의 35.4%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 〉 시도별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
전국	217,108	30,802	247,910	9.4
서울	27,084	6,415	33,499	8.5
부산	12,118	2,075	14,193	8.1
대구	10,292	1,248	11,540	9.1
인천	10,823	1,656	12,479	8.5
광주	7,100	896	7,996	11.4
대전	6,650	1,082	7,732	10.6
울산	4,430	670	5,100	10.0
세종	1,116	208	1,324	10.7
경기	45,883	8,287	54,170	9.5
강원	8,435	776	9,211	9.1
충북	10,656	781	11,437	11.7
충남	12,247	1,054	13,301	9.9
전북	12,482	841	13,323	10.1
전남	12,232	832	13,064	9.3
경북	16,423	1,284	17,707	9.8
경남	15,744	2,080	17,824	9.4
제주	3,393	617	4,010	10.9

주: 2020.12월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수는 7,732명으로 대전시 전체 등록장애인 72,853명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지적장애가 86.0%(6,650명), 자폐성장애가 14.0%(1,082명)로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20대가 27.3%(2,01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대 19.6%(1,514명), 30대 16.7%(1,292명), 40대 12.7%(984명), 50대 9.4%(7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54.7%가 20대 이하이다.



Ⅲ.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1. 의료 및 건강

발달장애인이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45.1%(264명)가 진료를 받고 있으며, 54.9%(321명)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 현재 치료·재활·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지속적 진료 받고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85	100.0	459	100.0	126	100.0
예	264	45.1	192	41.8	72	57.1
아니오	321	54.9	267	58.2	54	42.9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와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가 각각 24.0%(7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1.5%(37명), 진료받기 싫어서 10.6%(34명),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9.3%(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 〉 진료받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321	100.0	267	100.0	54	100.0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77	24.0	57	21.3	20	37.0
병의원까지 방문하기 불편해서	19	5.9	15	5.6	4	7.4
의료기관의 장애인 시설·설비 설치 미비로 이용이 불편해서	18	5.6	17	6.4	1	1.9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37	11.5	32	12.0	5	9.3
진료받기 싫어서	34	10.6	29	10.9	5	9.3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7	2.2	7	2.6	0	0.0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77	24.0	64	24.0	13	24.1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30	9.3	27	10.1	3	5.6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5	1.6	5	1.9	0	0.0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할지 몰라서	15	4.7	13	4.9	2	3.7
기타	2	0.6	1	0.4	1	1.9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25.3%(145명)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145명 중 24.1%(35명)가 고혈압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어서 치주질환 20.7%(30명), 당뇨병 14.5%(21명), 치아우식 13.8%(20명), 관절염 11.0%(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4 〉 앓고 있는 만성질환(중복응답, N=145명)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34	161.4	213	165.1	21	131.3
고혈압	35	24.1	33	25.6	2	12.5
뇌졸중(중풍)	2	1.4	2	1.6	0	0.0
심장질환	3	2.1	2	1.6	1	6.3
이상지혈증	8	5.5	8	6.2	0	0.0
당뇨병	21	14.5	20	15.5	1	6.3
갑상선장애	4	2.8	4	3.1	0	0.0
천식	9	6.2	6	4.7	3	18.8
폐질환	7	4.8	7	5.4	0	0.0
위염 및 위십이지장궤양	6	4.1	5	3.9	1	6.3
B형/C형 간염	2	1.4	2	1.6	0	0.0
간질환	6	4.1	2	1.6	4	25.0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	16	11.0	16	12.4	0	0.0
골다공증	4	2.8	4	3.1	0	0.0
백내장	1	0.7	1	0.8	0	0.0
정신질환	35	24.1	29	22.5	6	37.5
암	3	2.1	3	2.3	0	0.0
치주질환	30	20.7	29	22.5	1	6.3
치아우식(충치)	20	13.8	20	15.5	0	0.0
기타	22	15.2	20	15.5	2	12.5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이 40.0%(23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복지관 등에서의 운동 프로그램 확대 9.9%(58명), 의료진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대 9.6%(56명),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및 지식 제공 9.2%(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5 〉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85	100.0	459	100.0	126	100.0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234	40.0	191	41.6	43	34.1
의료진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대	56	9.6	43	9.4	13	10.3
발달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및 지식 제공	54	9.2	46	10.0	8	6.3
건강유지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	29	5.0	21	4.6	8	6.3
복지관 등에서의 운동 프로그램 확대	58	9.9	43	9.4	15	11.9
발달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재활전문가) 양성	48	8.2	35	7.6	13	10.3
보건소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10	1.7	8	1.7	2	1.6
발달장애인 특화서비스(치과, 여성 전문 등) 확대	34	5.8	24	5.2	10	7.9
지역 내 종합(대학)병원의 증설	9	1.5	6	1.3	3	2.4
치료 및 재활전문병원 증설	15	2.6	12	2.6	3	2.4
다양한 종류의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31	5.3	23	5.0	8	6.3
진료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4	0.7	4	0.9	0	0.0
기타	3	0.5	3	0.7	0	0.0

2.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의 41.5%(243명)가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32.3%(189명),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16.1%(94명),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10.1%(5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67.7%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일상생활 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85	100.0	459	100.0	126	100.0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189	32.3	151	32.9	38	30.2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43	41.5	199	43.4	44	34.9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94	16.1	71	15.5	23	18.3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59	10.1	38	8.3	21	16.7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88.6%(351명)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부모가 65.0%(228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활동지원사 21.7%(76명), 형제/자매 5.4%(19명), 배우자 4.3%(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7 〉 주로 도와주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351	100.0	275	100.0	76	100.0
배우자	15	4.3	13	4.7	2	2.6
부모	228	65.0	185	67.3	43	56.6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2	0.6	2	0.7	0	0.0
형제/자매	19	5.4	19	6.9	0	0.0
조부모	4	1.1	2	0.7	2	2.6
친척	3	0.9	3	1.1	0	0.0
친구/이웃	3	0.9	3	1.1	0	0.0
활동지원사	76	21.7	47	17.1	29	38.2
기타	1	0.3	1	0.4	0	0.0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주로 집에 있음이 33.7%(19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학원에 감 23.8%(139명), 근로활동을 함 17.35(101명),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함 15.2%(8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8 〉 낮 시간 활동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85	100.0	459	100.0	126	100.0
주로 집에 있음	197	33.7	170	37.0	27	21.4
학교, 학원에 감	139	23.8	88	19.2	51	40.5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함	89	15.2	73	15.9	16	12.7
근로활동을 함(센터 등 활동가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	101	17.3	82	17.9	19	15.1
건강관리를 함(병원 방문, 운동 등)	8	1.4	8	1.7	0	0.0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함	19	3.2	14	3.1	5	4.0
목적 없이 아무 곳이나 다님	15	2.6	14	3.1	1	0.8
기타	17	2.9	10	2.2	7	5.6

발달장애인이 낮에 주로 집에서 보내는 이유는 혼자서 밖에 나갈 수 없어서가 25.9%(5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18.3%(36명),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16.8%(33명),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13.7%(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9 〉 집에서 보내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197	100.0	170	100.0	27	100.0
사회복지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36	18.3	23	13.5	13	48.1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비용이 부담되어서	11	5.6	10	5.9	1	3.7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27	13.7	23	13.5	4	14.8
지역사회 내 편하게 갈 곳이 없어서	27	13.7	24	14.1	3	11.1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33	16.8	31	18.2	2	7.4
부모가 원해서	4	2.0	3	1.8	1	3.7
혼자서 밖에 나갈 수 없어서	51	25.9	48	28.2	3	11.1
기타	8	4.1	8	4.7	0	0.0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가 44.8%(262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16.8%(98명),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16.4%(96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9.1%(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0 〉 일상생활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85	100.0	459	100.0	126	100.0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262	44.8	206	44.9	56	44.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98	16.8	75	16.3	23	18.3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96	16.4	81	17.6	15	11.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53	9.1	41	8.9	12	9.5
전공과 확대	12	2.1	7	1.5	5	4.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21	3.6	15	3.3	6	4.8
장애인복지관 등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41	7.0	32	7.0	9	7.1
기타	2	0.3	2	0.4	0	0.0

3. 평생교육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84.4%(331명)가 참여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15.6%(61명)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표 11 〉 평생교육 참여 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392	100.0	338	100.0	54	100.0
예	61	15.6	47	13.9	14	25.9
아니요	331	84.4	291	86.1	40	74.1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몰라서가 29.9%(9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알았지만 참여 의사가 없어서 12.7%(42명),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8.8%(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2 〉 평생교육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331	100.0	291	100.0	40	100.0
몰라서	99	29.9	89	30.6	10	25.0
알았지만 참여 의사가 없어서	42	12.7	33	11.3	9	22.5
교육비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18	5.4	18	6.2	0	0.0
근처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17	5.1	13	4.5	4	10.0
나이가 부담되어서	26	7.9	25	8.6	1	2.5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29	8.8	24	8.2	5	12.5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26	7.9	18	6.2	8	20.0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11	3.3	11	3.8	0	0.0
주변 시선과 편견 때문에	10	3.0	10	3.4	0	0.0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20	6.0	19	6.5	1	2.5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이 불편해서	23	6.9	22	7.6	1	2.5
기타	10	3.0	9	3.1	1	2.5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42.1%(165명)가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13.3%(52명), 교육기관까지의 이동지원 12.2%(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3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392	100.0	338	100.0	54	100.0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	165	42.1	145	42.9	20	37.0
교육기관까지의 이동지원	48	12.2	44	13.0	4	7.4
강사나 동료의 발달장애 이해	39	9.9	31	9.2	8	14.8
학습지원 인력 제공	17	4.3	15	4.4	2	3.7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52	13.3	42	12.4	10	18.5
비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12	3.1	10	3.0	2	3.7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28	7.1	24	7.1	4	7.4
장애인평생교육사 별도 양성 및 배치	10	2.6	8	2.4	2	3.7
의사소통 지원(보완대체의사소통 등)	21	5.4	19	5.6	2	3.7

4. 경제활동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73.8%(313명)가 일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26.2%(111명)가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표 14 〉 현재 경제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424	100.0	354	100.0	70	100.0
예	111	26.2	91	25.7	20	28.6
아니요	313	73.8	263	74.3	50	71.4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곳은 일반사업체가 35.1%(3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25.2%(28명), 장애인 근로사업장 19.8%(22명), 장애인 관련 기관(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포함) 7.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5 〉 현재 일하고 있는 곳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111	100.0	91	100.0	20	100.0
자영업	2	1.8	2	2.2	0	0.0
일반사업체	39	35.1	30	33.0	9	45.0
정부 및 공공기관	7	6.3	5	5.5	2	10.0
장애인 보호작업장	28	25.2	25	27.5	3	15.0
장애인 근로사업장	22	19.8	17	18.7	5	25.0
장애인 표준사업장	2	1.8	1	1.1	1	5.0
장애인 관련 기관(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포함)	8	7.2	8	8.8	0	0.0
기타	3	2.7	3	3.3	0	0.0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22.0%(69명)가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회사에서 발달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19.5%(61명),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7.6%(5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6 〉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313	100.0	263	100.0	50	100.0
회사에서 발달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61	19.5	50	19.0	11	22.0
임금이 너무 낮아서	11	3.5	11	4.2	0	0.0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69	22.0	60	22.8	9	18.0
작업환경(편의시설, 근무시간, 근무조정 등)이 열악해서	15	4.8	15	5.7	0	0.0
출퇴근이 힘들어서	15	4.8	13	4.9	2	4.0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55	17.6	47	17.9	8	16.0
다른 질병(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12	3.8	12	4.6	0	0.0
재학 중이기 때문에	19	6.1	8	3.0	11	22.0
일에 필요한 기술이 없어서	16	5.1	13	4.9	3	6.0
취업정보가 부족해서	12	3.8	11	4.2	1	2.0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9	2.9	5	1.9	4	8.0
소득발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될까봐	17	5.4	16	6.1	1	2.0
기타	2	0.6	2	0.8	0	0.0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직업재활시설 확충이 38.0%(16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원고용의 확대 24.8%(105명),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15.6%(6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7 〉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424	100.0	354	100.0	70	100.0
직업재활시설 확충	161	38.0	134	37.9	27	38.6
지원고용의 확대	105	24.8	95	26.8	10	14.3
취업박람회 개최	15	3.5	13	3.7	2	2.9
취업정보 제공 창구의 확대	20	4.7	12	3.4	8	11.4
(졸업 전) 학교에서의 직업훈련 확대	18	4.2	15	4.2	3	4.3
직업재활 전문가 양성	25	5.9	22	6.2	3	4.3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66	15.6	50	14.1	16	22.9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4	3.3	13	3.7	1	1.4

5.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혼자서 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의 44.3%(259명)가 혼자서 외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5.7%(326명)는 혼자서 외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표 18 〉 혼자 외출 가능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85	100.0	459	100.0	126	100.0
예	259	44.3	222	48.4	37	29.4
아니요	326	55.7	237	51.6	89	70.6

지난 1개월 동안 어느 정도 외출을 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거의 매일이 49.7%(29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 2~4회 29.4%(172명), 거의 외출하지 않음 12.5%(73명), 월 1~3회 8.45(49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이 거의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32.9%(2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27.4%(20명),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16.4%(12명), 하고 싶지 않아서 11.0%(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9 〉 외출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73	100.0	65	100.0	8	100.0
교통이 불편해서	2	2.7	2	3.1	0	0.0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12	16.4	11	16.9	1	12.5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20	27.4	17	26.2	3	37.5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24	32.9	21	32.3	3	37.5
하고 싶지 않아서	8	11.0	8	12.3	0	0.0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4	5.5	3	4.6	1	12.5
기타	3	4.1	3	4.6	0	0.0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응답자 585명 중 72.5%(424명)가 TV시청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컴퓨터/인터넷 검색 등 39.5%(231명), 가족관련 일(친척 만남,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17.6%(1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13.7%(80명)가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 표 20 〉 참여한 문화 및 여가활동(복수응답, 응답자 수 585명)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986	168.5	777	169.3	209	165.9
없음	80	13.7	51	11.1	29	23.0
문화예술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미술전시회 등)	30	5.1	21	4.6	9	7.1
TV시청	424	72.5	347	75.6	77	61.1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231	39.5	179	39.0	52	41.3
문화예술 참여(글쓰기, 연주, 사진촬영, 그리기 등)	15	2.6	8	1.7	7	5.6
취미·자기계발 활동(요리, 독서, 교양강좌 등)	11	1.9	8	1.7	3	2.4
스포츠 관람(축구, 테니스, 수영 등)	4	0.7	1	0.2	3	2.4
스포츠 활동(축구, 테니스, 수영 등)	23	3.9	18	3.9	5	4.0
사회(자원)봉사, 종교 활동	27	4.6	25	5.4	2	1.6
여행(국내외 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25	4.3	17	3.7	8	6.3
사교 모임(동창회 모임 등)	9	1.5	9	2.0	0	0.0
가족관련 일(친척 만남,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103	17.6	91	19.8	12	9.5
기타	4	0.7	2	0.4	2	1.6

발달장애인이 참여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도를 살펴보면, 53.1%(268명)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6.9%(237명)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발달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23.1%(6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몰라서 17.5%(47명), 비용이 부담돼서 13.8%(37명), 가까운 곳에 시설 및 프로그램이 없어서 11.9%(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1 〉 불만족한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68	100.0	229	100.0	39	100.0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몰라서	47	17.5	44	19.2	3	7.7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62	23.1	48	21.0	14	35.9
비용이 부담 돼서	37	13.8	28	12.2	9	23.1
교통이 불편해서	3	1.1	3	1.3	0	0.0
편의시설이 없어서	21	7.8	17	7.4	4	10.3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34	12.7	33	14.4	1	2.6
가까운 곳에 시설 및 프로그램이 없어서	32	11.9	28	12.2	4	10.3
건강상(장애)의 이유로	30	11.2	28	12.2	2	5.1
기타	2	0.7	0	0.0	2	5.1

발달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42.2%(247명)가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발달장애인 여가문화 바우처 제도 신설 21.4%(125명), 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장애 전문 인력 배치와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각각 10.9%(6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2 〉 문화 및 여가활동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85	100.0	459	100.0	126	100.0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47	42.2	185	40.3	62	49.2
발달장애인 여가문화 바우처 제도 신설	125	21.4	103	22.4	22	17.5
여가문화 시설에 대한 장애 전문 인력 배치	64	10.9	51	11.1	13	10.3
편의시설 확대	52	8.9	42	9.2	10	7.9
교통 등 이동수단 확대	33	5.6	27	5.9	6	4.8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비용 지원	64	10.9	51	11.1	13	10.3

6. 주거

발달장애인이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족과 동거 89.9%(526명), 단독 거주 9.2%(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3 〉 현재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85	100.0	459	100.0	126	100.0
단독 거주	54	9.2	52	11.3	2	1.6
가족과 동거	526	89.9	402	87.6	124	98.4
기타	5	0.9	5	1.1	0	0.0

발달장애인이 앞으로 살고 싶은 주거 유형은 일반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 89.7%(525명), 공동생활가정(그룹홈) 5.0%(29명), 장애인거주시설 3.2%(19명), 요양보호시설 1.9%(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일반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발달장애인이 향후 함께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가 82.8%(434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혼자 살고 싶다 12.0%(63명), 마음 맞는 친구, 동료와 함께 살고 싶다 5.2%(27명)로 나타났다. 대다수 발달장애인은 전반적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4 〉 일반주택 거주 시 향후 함께 거주하고 싶은 사람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24	100.0	410	100.0	114	100.0
혼자 살고 싶다	63	12.0	51	12.4	12	10.5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434	82.8	335	81.7	99	86.8
마음 맞는 친구, 동료와 함께 살고 싶다	27	5.2	24	5.9	3	2.6

발달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사항은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이 54.0%(31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주택자금 제공 27.2%(159명),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 10.6%(6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5 〉 주거안정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85	100.0	459	100.0	126	100.0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	316	54.0	242	52.7	74	58.7
주택자금 제공	159	27.2	125	27.2	34	27.0
주택개조 사업 확대	46	7.9	35	7.6	11	8.7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	62	10.6	55	12.0	7	5.6
기타	2	0.3	2	0.4	0	0.0

7. 경제상태

최근 1년간 발달장애인의 월평균 총 소득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 39.0%(22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17.8%(104명),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3%(31명) 등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67.2%가 소득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6 〉 최근 1년간 월평균 개인 소득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85	100.0	459	100.0	126	100.0
없음	165	28.2	97	21.1	68	54.0
50만원 미만	228	39.0	195	42.5	33	26.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4	17.8	91	19.8	13	10.3
100만원 이상 ~ 150만원 이상	22	3.8	19	4.1	3	2.4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1	5.3	25	5.4	6	4.8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8	1.4	8	1.7	0	0.0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9	1.5	7	1.5	2	1.6
300만원 이상	7	1.2	7	1.5	0	0.0
잘 모름	11	1.9	10	2.2	1	0.8

발달장애인의 주 소득원은 배우자/동거가족의 소득이 53.0%(31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부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29.1%(170명), 본인의 근로소득 13.5%(7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7 〉 주 소득원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85	100.0	459	100.0	126	100.0
본인의 근로소득	79	13.5	66	14.4	13	10.3
본인의 자산소득(예금이자, 임대 수입 등)	8	1.4	7	1.5	1	0.8
배우자/동거가족의 소득	310	53.0	215	46.8	95	75.4
정부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170	29.1	154	33.6	16	12.7
보험(국민연금, 민간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	0.7	4	0.9	0	0.0
동거하지 않는 가족/친척의 용돈, 이웃, 사회복지기관의 후원	14	2.4	13	2.8	1	0.8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생활비 지원이 44.3%(25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의료비 지원 22.1%(129명), 교육비 지원(교재비, 준비물, 학원비 등) 11.1%(65명) 등으로 나타났다.

〈 표 28 〉 경제적 지원 관련 필요 사항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85	100.0	459	100.0	126	100.0
의료비 지원	129	22.1	94	20.5	35	27.8
교통비 지원	25	4.3	21	4.6	4	3.2
교육비 지원(교재비, 준비물, 학원비 등)	65	11.1	44	9.6	21	16.7
양육비 지원	35	6.0	20	4.4	15	11.9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지원	12	2.1	9	2.0	3	2.4
생활비 지원	259	44.3	220	47.9	39	31.0
주거비 지원	52	8.9	45	9.8	7	5.6
보호간병비 지원	7	1.2	5	1.1	2	1.6
기타	1	0.2	1	0.2	0	0.0

IV.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방안

1. 의료보장

첫째, **장애친화병원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치과나 여성전문 산부인과처럼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치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중증장애인의 검진 및 진료에 따른 추가적 시간 소요,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참여가 저조하다. 또한 참여 병원의 미흡한 편의시설 설치,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병·의원의 낮은 접근성,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친화병원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설, 장비,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애친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발달장애에 대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홍보가 부족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 및 참여 병원의 미흡한 편의시설 설치,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의료기관의 참여도가 낮은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이에 대한 대전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현재 전국에 총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충청권에는 충북대학교병원 1곳만 운영하고 있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이며 통합적인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도전적 행동이 심한 성인 장애인이 이용하고 치료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전시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병원 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적 접근성을 높여 중증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

2. 일상적 생활보장

첫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미충족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대전시 활동지원 추가급여 신설과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추가 확대를, 주간활동서비스는 추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대전시는 2021년 기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47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신변자립이 어렵거나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주간보호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중증 등 발달장애인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정도, 욕구 등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장애정도, 연령, 도전적 행동 등에 따라 추가로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보완대체의사소통(AC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등과 같은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이 역할을 기존 복지관에 위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및 가족상담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애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평생교육보장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현재 자치구별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센터에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대전에도 설치하여 포괄적이며 전문적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적인 부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노동보장

첫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 내에 직업재활시설을 추가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며,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이들의 기능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고용 및 시설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임금 보전책 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 지원 혹은 별도 급여를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이용률과 취업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5. 사회 및 문화·여가생활 보장

첫째, 문화·여가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생활 향유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 박물관, 다목적체육관, 평생교육센터, 문화센터, 동행정복지센터,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에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점자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나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이외에 교통편의, 의사소통 지원, 외출활동 지원,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6. 주거보장

첫째, 다양한 형태의 주거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은 자립의 핵심이다. 일단 살 장소인 주거가 마련되어야 그 안에 자립을 이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주거 매니저 양성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택에서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이를 지원하는 주거 지원 방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 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주거 정책은 복지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 역시 시군구청, 동행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은행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분절되고 다원화된 구조는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을 할 수 없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주거 욕구 사정, 개인별 주거 지원 계획 마련, 주거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7. 소득보장

첫째, 저소득층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은 인간 삶의 기본적인 토대이지만, 발달장애인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 사적이전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이전소득의 규모나 안정성은 높지 않다. 발달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대표적 공적소득은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이 있지만, 장애인의 최저 삶의 질을 보장하기에는 급여 수준이 낮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급액이 2만원으로 급여 수준이 낮다. 따라서 대전시 자체 공적이전소득의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건강한 미래설계를 위해서 경제적 자립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즉,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자신의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등과 같은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능력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를 위해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능력강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아동발달 계좌 또는 희망키움 통장 등과 같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소득 아동 또는 수급자 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의 연장선상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산형성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정토론]

실질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위한 제언

최명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

장차법 제정 14주년, 올해는 유난히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관심인가 싶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혐오의 현실을 보는 것 이기에 장애인권 현실을 보는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산재함을 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대전지역 발달장애인의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좀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제정을 위해 식발, 2018년 발달장애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식발, 2022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식발식을 하루 앞에 두고 열게 된 토론회이기에 더욱 실효성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0년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발달장애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안이 나오고 실현이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수조사는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사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발달장애인정책에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와 발제를 위해 애써주신 송지현 선임 연구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수는 7,732명, 대전시 전체 등록장애인은 72,853명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86.0%(6,650명, 자폐성장애가 14.0%(1,082명)이며, 연령별로 20대가 27.3%(2,018명) 발달장애인의 54.7%가 20대 이하라고 한다.

의료 및 건강, 일상생활, 평생교육, 경제활동,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주거, 경제 상태로 나눈 설문내용을 보면서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어느 것 하나의 결핍이 아닌 전반적 지원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결과였다.

제언 이전에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대변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발달장애인의 현실임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 더불어 본인이 상담을 하며 시청복지과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 등에 지원을 의뢰했던 사례들도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외치며 지역 안에서 일어난 무거운 사례들을 통해 좀더 체계적인 지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최근 사회적 지원 부재로 인해 고통 속에서 죽어간 발달장애인과 가족사건들

번호	일시/지역	내용
1	2012년 11월 경기 파주	발달장애인 누나와 뇌병변 장애 남동생이 화재로 둘 다 사망
2	2013년 6월 대구	어머니가 자폐아인 딸(4)과 동반자살을 계획했다가 딸을 살해
3	2013년 10월 부산	46살 백 모 씨가 지적장애 1급인 7살 아들과 함께 투신
4	2013년 11월 서울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며 발달장애를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 살해 후 자신도 목매..
5	2014년 3월 2일 경기 등두천	4살 발달장애..아들과 함께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뛰어 내림.
6	2014년 3월 13일 광주	발달장애..아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일가족 목숨 끊어
7	2014년 12월 울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
8	2015년 1월 대구	장애인 언니를 보살피며 삶을 버텨온 20대 여성의 자살
9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지적장애인 형을 돌보던 동생이 형을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투신
10	2016년 3월 울산	60대 아버지와 20대 지적장애인 딸이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11	2017년 10월 충북 옥천	은둔생활하던 야산에서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
12	2018년 11월 서울	14층 아파트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가 뛰어내려...
13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어머니와 여섯 살 난 장애아들이 굶어 죽은 지 두 달 만에 발견
14	2019년 12월 대전	지적장애 자녀의 어머니와 활동지원사가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해.....
15	2020년 3월 제주도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16	2020년 4월 서울 성동구	4개월 발달장애 자녀 엄마가 살해
17	2020년 6월 광주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돌봄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가운데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엄마가 차량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18	2020년 8월 서울 중랑구	코로나로 휴교된 후 사설 기관에서 돌봄 중 추락사
19	2020년 9월 서울 양천구	코로나 시설 휴관 중 베란다에서 추락사
20	2020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로나 시설 휴관 중 베란다에서 추락사
21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	10대 발달장애인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사망
22	2021년 3월 경기 고양	코로나로 기관 이용이 어려워 산책 중 실종 후 사망
23	2021년 2월 서울 서대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 주차장에서 약물로 자살
24	2021년 4월 서울 강남구	20대 발달장애인 아버지 자살
25	2021년 5월 충북 청주시	7살 발달장애인 어머니 자살
26	2021년 11월 전남 담양	발달장애인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와 노모 살해

▲최근 사회적 지원 부재로 인해 고통 속에서 죽어간 발달장애인과 가족사건들.
자료=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격리처럼 느껴진 보호... "평범하게 봐주는 시선이 소중한 해"



정미경 씨가 호흡이 고르지 못해 양치를 혼자 할 수 없는 아들에게 양치를 시켜주고 있다. 2022.3.17 /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20306010001047>



2021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0가구뿐... 인지도, 인력...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
www.joongdo.co.kr

지속적으로 시청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를 했던 사례들은 모두 성인발달장애인이며, 도전적행동(어려운행동)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되 지역사회 안에서 배제된 사람들이기도 하다. 부모가 온전히 자녀의 돌봄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녀와 어떻게든 해보려는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부모가 돌봄과 지원을 하기엔 이미 한계와 소진에 부딪힌 상황이었으며, 장애인 관련 이용기관에서는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 어머니의 말씀처럼 도전적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자녀와의 삶은 '일상이 코로나'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 수도 없이 문의를 하고 대안을 물었지만, 대안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가족은 그 돌봄의 책임을 감당하기에 어려워 겨우겨우 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하는대전장애인가족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는 해마다 420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장애인권 관련 정책을 제안을 해왔고, 모니터링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아쉬운 것은 그 정책이 매번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인권정책 중 이번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지원체계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인권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 **알기 쉬운 정보지원 체계 구축:** 기존 읽기쉬운자료 제작 가이드라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례) 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요 정책 정보 선정 후 해당 정보에 대한 읽기 쉬운 자료 변환 사업 실시
(참정권 관련, 일상생활 정보제공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시각화된 단서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 환경 마련

(시각적 스케줄, 픽토그램, 게시 및 안내 관련한 지원 필요함)

(사례: 코로나 상황에서 정보접근에서 배제되었던 발달장애인, 재난안전문자에 앱을 연동해 동영상이나 음성제공을 제안했으나 답을 얻지 못함)

[붙임3]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정책요구안

“지역에서, 동네에서 같이 살자!!” 2022 대전 장애인 인권 정책 요구안

요구안	세부정책과제
탈시설 장애인주거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설치, 전담공무원 배치 - 탈시설자립정착금 확대 - 지역사회 독립생활 가능한 주거 +복지 서비스 결합 - 통합공공임대주택 물량 5% 확보 - 주거서비스 제공 - 과도기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장애인 노동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2026년까지 일천개 도입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활동 제공기관 확대 - 주간보호 제공인력 재편 - 필요한 사람에게 24시간 지원서비스 - 중등도가 높은 장애인에게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이동권 전면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광역이동체계 확립(대전,세종,충남,충북 이동지원센터간 협력) -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100% - 저상버스 100% 도입(모든 교체차량 저상버스) - 차별버스 B1철폐 휠체어탑승버스 조기도입 -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대전장애인버스'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5개 전 자치구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비 지원확대(모두사랑, 풀꽃야학) - 평생학습기관 장애인 접근 보장 - 대전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추진
여성장애인의 이중적차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지원조례 제정

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주로 집에 있음 33.7%, 혼자 나갈 수 없어서 25.9%, 가장 필요한 지원은 활동보조 시간 확대 44.8%, 가족이 돌봄 지원 74.7%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사건에서 공통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인력제공 기준이 적용되는 현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비스의 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주간활동 제공기관 지속적 확대

2022년 주간활동 이용가능인원이 10,000명으로 확대되지만, 대전시는 2022년 이용가능인원 260명의 절반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구별로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1개 정도씩 늘리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바우처확대 폭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인 상황.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의지와 자격이 있다면,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2) 주간보호 제공인력 유연화

현행 발달장애인 4인당 1명의 천편일률적인 인력제공 기준으로는 또 다른 학대사건을 예방할 수도, 이용시설의 중증장애인 기피현상도 막을 수 없다. 주간활동 서비스가 1인형, 2인형, 4인형 등으로 구분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주간보호센터의 제공인력 기준도 유연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하다.

(3) 중등도가 높은 장애인에게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도전적 행동지원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모델 제안
- 최중증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해 1:1또는 2:1의 지원인력 필요
- 대전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기반 혹은 주간보호 서비스 기반 모델 도입을 위해 추가지원예산 편성과 사업기관 공모
- 최소 30명 정도로 추산되는 관내 최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사업확대
- 자해, 타해 특성이 강한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주택 설치

- 필요한 사람에게 24시간 돌봄지원 서비스. 현재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대상자 없음. 관내 도전적 행동지원체계가 보편화되기까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별도의 판정체계)

3. (탈시설)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 가족과 동거 89.9%, 일반주택에 살고 싶다 89.7%, 혼자 살고 싶다 12.0%, 주택 제공 필요 54.0%

지난 해 대전시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앞으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주택정책과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가 주최한 교육에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것 말고는 벤치마킹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이후 진행상황을 듣지 못함. 탈시설로드맵 실현을 위한 제안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주거지원 제안

(1) 탈시설주거지원단 설치, 전담인력 배치

※ 자치단체별 2019년 탈시설 전담부서 설치현황

시.도	설치년도	탈시설전담부서 및 전환기관 운영
서울특별시	2009	서울복지재단(6명)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대구광역시	2015	탈시설자립지원(3명)
광주광역시	2017	광주복지재단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5명)
경기도	2017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시 복지개발원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2019년 현재 전국 광역시 중 인천과 대전에 탈시설전담부서 미설치. 탈시설 본격화 준비를 위해 지원단과 전담인력 배치

(2) 탈시설 자립정착금 확대

김성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울산, 세종, 충남과 더불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소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으며, 전혀 지원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 2010년을 전후하여 지역 장애인단체의 요구로 1인당 5백만원씩 책정되었던 자립지원정착금이 인상도, 삭감도 아니고 아예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이유를 공개.

1인당 자립지원정착금 1천만원 책정

※ 2020년 현재 타 시도 현황

서울 천삼백만원

대구,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천만원

인천, 광주 8백만원, 부산 7백만원, 강원 650만원, 충북 5백만원

(3) 지역사회 독립생활 가능한 주거 + 복지서비스 결합

지역사회 또는 시설 등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단계별 자립생활 주택 개발, 운영.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체험형, 교육형, 정착형으로 세분된 자립생활주택 및 주거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필요.

(4) 통합공공임대주택 물량 5% 확보

2022년부터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거약자용 주택 5%이상 공급예정. 대전관내 통합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를 확보하고 주거서비스를 결합

(5) 주거서비스 제공

- 현재 생활시설과 그룹홈 형태 이외에 대전지역의 주거지원서비스 전무
- 탈시설 추세에 맞춰 개별특성에 따라 완전독립형, 부분독립형, 공동생활형, 요양형으로 주거공간을 세분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 2023년 주거서비스 제공업체 1차 공모

(6) 과도기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제재강화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발생 장애인 시설 즉시 폐쇄.(기존 행정처분 차 개선명령 2차

- 시설장 교체 3차 시설폐쇄에서 1차 시설폐쇄가 가능.)
- 인권침해 거주시설은 시설단위 지역사회 전환계획을 통해 사실상 시설운영 중단
 -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지원 중단

4.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일하고 있지 않음 73.8%,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22.0%. 이에 장차연에서는 권리중심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다.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 2026년까지 일천개 도입

①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장애인의 경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62.7% 비경제활동인구. 그중 중증장애인 79.9%가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중 28.7%가 일용직, 32.2%가 임시직, 1년 이상 상용직 39%
비경제활동인구 63%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거나 가족의 부양으로 생활

② 현황 : 2020년 서울 260명으로 시작, 올해 350명 예정. 경기, 전남, 충북 등 일부 지자체로 확산.

장애인노동에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경제적 교환가치를 갖는 상품생산보다 **사회적 가치에 주목**. 장애인권익옹호직무, 문화예술직무, 장애인인권교육직무를 기본으로 시간제(주20시간)복지형(주14시간 이내)으로 셋팅

③ 대전광역시 2026년까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일천개 도입 제안. 관내 모든 중증장애인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 것인가? 공공일자리취업자로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게 도입할 것을 제안

5.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개편 및 확대

-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67.7%, 그 중 부모의 도움 65.8% 임.
- 전체 발달장애인구의 80%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는 부족한 상황

- 정부가 2018년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기존 발달 장애인 지원체계에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나 가족에 의한 지원에 의존
- 대표적인 장애정책 중 하나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발달장애인도 이용할 수는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월평균 급여량은 약 120시간에 불과
 - 특히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지원의 방식도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외출시 2:1동반)

6. 장애인의 건강권

- 정기진료 받지 않음 54.9%, 정기건강검진 필요 40.0%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 대 및 의료기관 내 전문인력 배치: 발달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 매뉴얼 개발 , 보급.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필요.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 필요.
- 의료서비스 이용시 동행서비스 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건강관련 정보 제공(예, 치과진료 등)

7.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가,문화권

- 평생교육 참여경험 없음 84.4%, 혼자 외출 못함 55.7%, TV시청 72.5%, 욕구반영 프로그램 보급 42.2% => 접근성, 다양성 필요.

- (1) 대전시 5개 전 자치구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 (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운영비 증액 및 시설 개·보수 지원
- (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맞춰 대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면개정(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현실적 조례)
- (4) 대전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추진
- (5) 대전시 장애인 평생교육 도시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 설치

발달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법 제정이 된지 7년이 되었지만 발달장애인의 삶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권리에산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발달장애인에게도 필요하다. 장애적 특성과 욕구, 환경 기반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실행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대전광역시로 되길 간절히 바란다.

[지정토론]

대전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마련 방안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중심으로

박정은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들어가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발달장애인의 지능지수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 역시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교육과 훈련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영위할 수 있다.

발달장애는 그 사회의 수준과 시대에 따라 정의와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체적 장애인은 장애를 스스로 인식하고 장애로 인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자기의 사 표현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장애를 인식하거나 장애인임을 자처하는 경우는 비발달장애인에 비해 적다

주변사람들이 발달장애인으로 인해 불편과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싫어서 장애로 구분하고, 보호를 명분으로 다른이들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하였으며, 그들의 권리에 대한 대리권 행사가 당연히 여겨짐은 물론 법적 권리의 제한도 서슴치 않았다.

발달장애인의 태어나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수’와 ‘보호’라는 명목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이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현황

2021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은 7,975명으로 지난 5년동안 969명이 증가하였다. 동일한 기간동안 전체 장애인구의 증가는 309명이며,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구는 오히려 감소추세로 볼수 있다.

*2017년 대전광역시 장애인구 72,180명, 발달장애 인구 7,006명임.

*2017년 전국 장애인구 2,545,637명, 발달장애 인구 225,601명임. 2021년 전체장애인구는 2,644,700명으로 5년간 99,063명 증가하였으며, 발달장애 인구는 2021년 255,207명으로 같은기간동안 29,606명이 증가하였음 5년간 증가된 장애인구 중 29.88%가 발달장애인임.

이는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비(非)발달장애인 인구증가와 비교하면 높은 증가세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대전광역시 뿐아니라 전국 장애인구 현황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1. 대전광역시 2018년~2021년 장애인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장애인구	72,927명	73,222명	72,853명	72,489명
발달장애인구	7,289명	7,559명	7,732명	7,975명

발달장애 인구의 증가는 우리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기까지 특수 교육을 지원받던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이후 서비스 단절을 겪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어려운 현실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

최근까지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¹⁾을 하는 뉴스를 우리는 적지 않게 접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부담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33.7%가 '낮 시간에 주로 집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6%는 '목적 없이 아무곳이나 다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사유에 대해서도 18.3%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라고 답변하였고, 16.8%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라고 답변하였으며, 13.7%가 '지역사회 내 편하게 갈 곳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1) 2022.3.6. 연합뉴스 '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구속'
2022.3.9. MBC "잇단 발달 장애인 가족의 비극... 사회적 타살"

이에,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부담 경감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위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심으로 발제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전광역시에는 47개의 주간보호시설과 44개의 직업재활시설에서 1,710명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5,923명임을 볼 때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하기 위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발제문의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중 “일상적 생활보장”의 첫 번째가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급여 확대의 필요이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후 지금의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중 선택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2년부터 단축형의 경우 월85시간, 기본형 월125시간, 확장형 월167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지난해 대비 활동지원 감액도 50%로 감소하였으며, 중증장애로 인해 서비스 진입이 곤란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주간활동 서비스는 2022년 집중지원으로 변경되어 기본급여의 150%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는 서비스 시간의 확대 및 활동지원서비스 감액시간의 축소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확대에 한발 더 다가갔다.

[표2. 2022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

	집중지원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제공시간	기본급여 150%	월85시간 (하루4시간)	월125시간 (하루5.5시간)	월165시간 (하루7.5시간)
활동지원감액			월22시간 차감	56시간 차감

대전시의 경우 274명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기준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²⁾는 100명에 불과하다.

2)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을 갖고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뒤 바우처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용자

2021년 6월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주간활동 수급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60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33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어서”라고 답하였다.

2018년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5개소(구별 1개소)였으나 2022년 4월 현재 6개소(중구 1개소 추가지정)로 증가하였으며, 4개 구에서 제공기관 추가지정을 진행하고 있어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1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제공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낮 활동 서비스의 제공이 일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추가로 선정되는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컨설팅, 발달장애인 인권 교육, 주간활동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며, 대전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서비스 정보의 부재를 해소하고자 한다. <끝>

[지정토론]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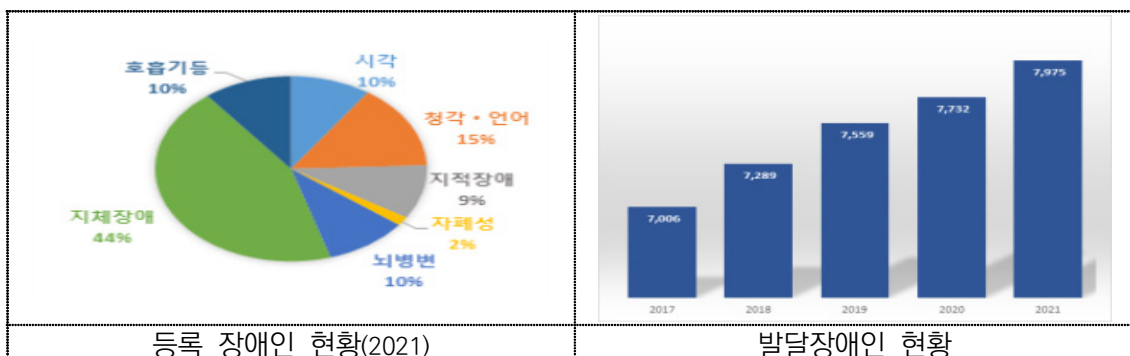
박찬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I. 장애인 복지 일반현황

1 장애인 인구

-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72,489명(2021년)**으로 전체인구의 5%를 차지
 - 전체 장애인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은 7,97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돌봄부담 가중 및 가족해체 위기 등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 등 역점적 대응 필요
- 등록장애인 비율은 4.8%(2017년) ⇒ 5%(2021년)로 0.2% 증가

구분	전체인구	계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호흡기등
'17	1,502,227	72,180	34,269	6,073	933	7,523	7,133	9,288	6,961
'18	1,489,936	72,927	33,776	6,305	984	7,532	7,080	10,078	7,172
'19	1,474,870	73,222	33,193	6,531	1,028	7,438	7,035	10,645	7,352
'20	1,463,882	72,853	32,542	6,650	1,082	7,284	6,996	10,788	7,511
'21	1,452,251	72,489	31,992	6,845	1,130	7,193	6,942	10,142	8,245



② 장애인 복지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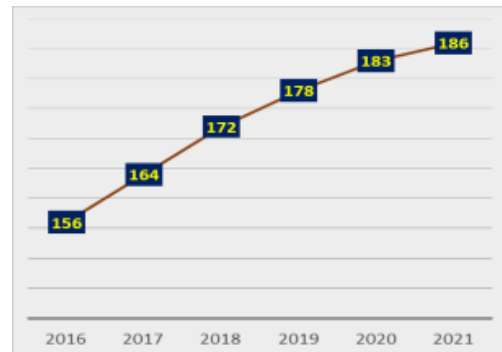
- 2022년 279,490백만 원 / 시 전체예산 5조 3,667억 원 대비 5.2%
- '18년 179,349백만 원 → '22년 279,490백만 원(55.8%↑)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백만원)	172,349	228,179	242,475	277,055	279,490

③ 장애인 복지시설

- 186개소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6년 대비 19.2% 증가
- * 2018년 대비 2021년말 현재 8.1% 증가

구 분	개소수		
	2016	2018	2021
합 계	156	172	186
유형별거주시설	20	21	21
단기거주시설	17	19	20
공동생활가정	32	34	37
장애인복지관	8	8	8
주간보호시설	40	41	47
직업재활시설	19	25	30
기타 체육시설 등	20	24	23



발달장애인 관련 법규(조례포함)

- ▶ 관련법규 제정(지원근거 마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0.제정)
 - ※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2016.11.28.개소) / 3개팀 12명
- ▶ 우리시 조례제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0.12.31.)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21.4.9.)
- ▶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 대전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2018~2022)에 포함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II. 발달장애인 지원 주요사업

□ 2022년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예산

- 시 장애인복지 예산(장애인복지과) 279,490백만원 중
 -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표시 포함) : 119,430백만원(42.7%)

구분	사업명	계(천원)	국비(천원)	시비(천원)
	합계	119,430,608	75,958,564	43,472,044
일자리	소계	5,897,337	2,499,000	3,398,337
	* 장애인 복지일자리	3,252,000	1,626,000	1,626,000
	발달장애인 영양보호사 보조	1,746,000	873,000	873,000
	행복어울림농장	225,556	-	225,556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육성 사업	34,807	-	34,807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요원 배치	638,974	-	638,974
	소계	113,027,654	73,314,238	39,713,416
가족 및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문화체험행사	6,840	-	6,840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4,500	-	4,500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2개소)	499,152	-	499,152
	지적장애인지립지원센터 운영지원	125,560	-	125,560
	자폐성장애인지립지원센터 운영	94,973	-	94,973
	* 장애인활동지원(국비사업)	91,186,148	63,830,304	27,355,844
	* 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	426,720	298,704	128,016
	*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7,348,724	-	7,348,724
	*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1추)	74,928	52,450	22,478
	더행복한 장애아동 가족만들기	6,480	-	6,480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838,400	3,386,880	1,451,520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111,429	78,000	33,429
	발달장애인 가족후식지원	90,000	63,000	27,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5,528,571	3,870,000	1,658,57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지역센터)	184,800	92,400	92,400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1,961,429	1,373,000	588,429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	16,000	8,000	8,000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14,000	7,000	7,000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지역 전문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16,000	8,000	8,000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493,000	246,500	246,500
소계	246,465	-	246,465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180,000	-	180,000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3개소)	66,465	-	66,465
	소계	259,152	145,326	113,826
권익지원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	2,500	2,000	500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	50,000	40,000	10,000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206,652	103,326	103,326

Ⅲ. 발달장애인 현안문제 역점추진

□ 최종증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2022 신규)

※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관, 2022년 신규 사업 지정 추진

추진배경

- ▶ 발달장애인 대부분 재가거주 또는 시설(거주, 주간보호)을 이용하고 있으나 다수 인원은 「도전적 행동*」을 보이고 있어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 가족해체 위기 등 어려움

* 도전적행동: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① 찾아가는 행동중재 지원

- 대전에 거주하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 및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10명
 - 행동중재 전문인력 4명 채용

② 행동인지 AI 기반 발달장애인 지원

- 대전 관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기관 1개소 선정 및 발달장애인 2명 이상 지원
- 행동인지AI 시스템 1개 기관 설치, 행동인지AI 시스템을 통한 발달장애인 서비스 종사자의 지원, 참여기관 종사자 행동중재 지원 23회

③ 활동지원사 최종증 발달장애인 지원 역량 강화

- 지역사회 내 예비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20명
 - ※ 발달장애 지원 전문교육 개설 1회, 교과목 6과목(16시간) 운영

□ 발달장애인 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 (그동안) 대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욕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장·단기 사업구분 추진
 - 우선적 필요사항은 단기에 추진하되 지속적인 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2023~2027)」에 반영 등 추진

IV. 실태조사결과 제안 추진방향(계획)

1] 의료보장

1-1. 장애친화병원 설치 확대

제안 사항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확대 및 친화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지원 및 의료인 교육
-------	---

① 장애 건강검진 기관 지정 운영

- 운영기관: 대청병원(종합병원) / 2018. 8월 보건복지부 지정

②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

- 운영방법: 대전 성모병원 / 민간위탁(공모지정) - 2019.4.16.
- 진료내용: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진료, 검진 및 분만 서비스
※ 2021년 진료환자 220명, 일반검진 111명, 분만 1명

③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 운영기관: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 2020. 7월 개소(둔산동)
- 시설규모: 지하1, 지상6층(953.8㎡) / 운영인력 6명
※ 2021년 치과치료 2,911명, 치료비 지원 875명

1-2.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확대

제안 사항	건강주치의제도는 의료인 참여가 필수이므로 의료기관의 참여도가 낮은 원인의 면밀한 진단과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	---

- (그동안) 정부에서 1,2단계 시범사업('18.5~'21.9)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2021. 9. 30.부터 3단계 시범사업 운영 중

-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이 건강주치의를 직접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임 / 대전 관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18개소(2022. 3월 현재)

-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홍보강화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 * 유관기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 ※ 최근(3. 28) 국회에서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안 상정: 대상자 확대 (중증→모든장애인) 및 참여 의료기관 대해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1-3.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필요

제안 도전적행동의 성인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항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병원내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여 각 지역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정운영 / 전국 10개소 지정
 - 단, 우리시는 장애인건강권 및 지역보건의료법 등에 의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충남대학교병원(권역의료재활센터 2층)
 - * 운영인력: 7명 / 센터장(겸임의1), 3개팀 6명(행정1, 간호2, 복지2, 물리치료1)
- **(앞으로)** 공모시 참여 및 개원 예정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보공유 등 치료방안 공동모색

2] 일상적 생활보장

2-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급여 확대

제안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활동지원 추가확대,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신설을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

- **(그동안)** 종일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대상: 18세이상~65세미만 발달장애인
 - 제공시간: 월 100시간(기본형), 월 56시간(단축형), 월 132시간(확장형) 중 이용자가 선택 / '21년 기준
- **(앞으로)**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인 집중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방안 모색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 제공시간: 월 125시간(기본형), 월 85시간(단축형), 월 165시간(확장형) 중 이용자가 선택 / '22년 기준

2-2.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주간보호시설 확충

제안 사항	도전적행동 있는 경우와 나이가 많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발달장애인 특성 등을 고려한 추가인력 지원 등 검토
-------	--

- (그동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7개소 운영(2021. 12월 현재)
 - 이용자 정원 688명, 현원 576명(이용율 83.7%) / 종사자 163명
 - 도전적 행동 및 나이가 많은 발달장애인 이용 어려운 문제 존재
- (앞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나이가 많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주간보호시설이 되도록 추가인력 지원 등 검토

2-3.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서비스 확대

제안 사항	보완대체 의사소통센터 개소, 기존 복지관에 위탁하는 것도 고려 ※보완대체의사소통: AC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

- (그동안) 관련 조례제정 및 연구기관을 통한 정책연구 등 추진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제정(2021.2) : 센터설치 근거마련
 - 현 조례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지원 등 모든 장애인대상
 - 수어통역사 채용(시청), 기타 공공기관별 문자통역, 수어통역 등 지원
 -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한 정책연구 수행, 타시도(서울시) 사례 확인
- (앞으로) 복지관별 발달장애인 대상 의사소통실 개설 등 의견 수렴

2-4.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제안 사항	자치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프로그램개발 활성화(가족휴식지원 등)
-------	--

- (그동안) 장애인 가정의 가족해체예방 등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2개소(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연대)
 - 사례관리, 동료상담지원, 가족역량강화, 인식개선교육, 자조단체운영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2021년: 돌보미 파견 178가정, 휴식지원 73가정)
 -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2021년: 105가정 406명)
- (앞으로) 가족지원센터 확대여부는 부모단체 및 자치구와 협의 추진

3] 평생교육보장

3-1,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 확대

제안 사항	①자치구별 평생교육센터에 발달장애인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②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 전문적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	---

- (그동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3개소) 지원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 공모 지원(10개소 300명) / 시각, 지체, 청각언어, 발달장애인 대상 등
 - * 10개소 300명 교육중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지원 4개소 140명
 - 기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지원(2021년 282명)
- (앞으로) 자치구별 평생교육센터와 협의 프로그램개발 확대방안과 전문적 평생교육센터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 추진

4] 노동보장

4-1,2.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근로장애인 임금지원

제안 사항	1) 공공기관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직접운영하여 발달장애인 취업 활성화 2)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지원 또는 별도 급여 신설
-------	---

- (그동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738명 지원
 - * 직업재활시설 30개소 614명, 기타 요양보호사 보조 등 124명
 - 시설유형별 수익성, 장애인고용공단 지원 등 감안 별도급여 지원은 어려움
- (앞으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시설확충 등 중장기 계획 반영

5] 사회 및 문화·여가생활 보장

5-1,2.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향상 및 프로그램 확대

제안 사항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문화시설에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마련
-------	--

- (그동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 (앞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편의시설 개선요구, 행사 등 개최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 주거보장

6-1. 다양한 형태의 주거서비스 제공 필요

제안	다양한 주택에서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지원하는 주거지원방안 확대필요
사항	-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주거 매니저 양성 등

- (그동안) 탈시설 장애인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체험홈(7개소 12명) 운영 및 장애인주택 지원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주택정책과, 대전도 시공사, LH 등)
 - 일부 타 시도에서도 LH 등과 협약 등 자립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추진
- (앞으로) 사회서비스원과 협의, 주거전환 체계화 및 자립지원 역량강화
 - ※ 주거전환 체계화: 주거선택 — 주거전환 준비 — 초기정착 — 안정화

7] 소득보장

7-1. 저소득층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필요

제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추가지원하고 있으나 급여수준이 낮음(추가 2만원)
사항	- 대전시 자체 공적 이전소득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

- (그동안) 중증장애인 대상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과 장애수당 지급
 - 장애인연금: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이하
 - 장애인연금 지원: 11,097명 37,474백만원 / 최저 40,000원~최고 387,500원
 - 추가지원(21.7월부터): 1인 월 2만원→3만원('22년 4,700명 1,692백만원)
 - 장애수당 : 최소 월 4만원(18세 이상) ~ 최대 월 22만원(18세 미만)
 - ※ 추가지원(장애아동수당): 월 20,000원 / 395명 95백만원
- (앞으로) 공적급여 기준 외 별도(추가)지원은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7-2.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

제안 사항

자신의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등과 같은 영역에서 건강한 삶 향유

-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산형성사업 개발 필요

※ 자산형성사업 : 예시) 아동발달계좌 또는 희망키움 통장 등

-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연금 등 공적급여의 제한성으로 실질적 자립능력 강화에는 한계성 있음
 - 대상연령, 생활정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보건복지부)가 필요
-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예시) 검토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하되 15세이상 40세 이하
 - 추진방법 : 지역은행과 협약, 자립통장 개설(금융기관 상품개발)
 - 지원내역 : 본인 매월 10~20만원 저축시 15만원 정도 매칭 지원
 - 운영방법 :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중간지원 연계 등 관리 및 지원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 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2020. 6. 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 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 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시행일: 2023. 1. 28.] 제15조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

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제목개정 2010. 5. 11.]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2021. 12. 7.>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제목개정 2010. 5. 11.] [시행일: 2022. 12. 8.] 제21조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

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지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 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 ⑥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언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1.>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5. 11.>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

부칙 <제17792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

| 인 쇄 | 2022년 4월

| 발 행 | 2022년 4월

| 발행인 | 송 두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 주 소 |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타워 13층

| 전 화 | (042) 472-9040 | F A X | (042) 472-9046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EM실천

| 전 화 | (02) 875-9744 | F A X | (02) 875-9965

ISBN 978-89-6114-888-7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ISBN 978-89-6114-888-7 93330